



터키항공

여객운송약관

제 1 조

정의

“수하물”이란 여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 및 비위탁 수하물을 포함합니다.

“수하물 표”란 위탁 수하물의 식별과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증표입니다.

“수하물 영수표”란 여객의 위탁 수하물의 운송에 있어 운송인이 동 위탁 수하물의 영수증으로서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연결항공권”이란 한 여객에게 별도의 항공권과 동시에 발행되는 항공권으로서, 단일 운송계약을 형성합니다.

“항공권”이란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하여 발행된 계약 조건, 알림 및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 영수표” 또는 전자항공권을 의미합니다.

“도중체류”란 운송인의 사전 합의 하에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여객이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항공권”이란 운송인에 의해 또는 운송인을 대신해서 발행된 여정/영수표 및 전자쿠폰 또는 해당되는 경우, 탑승 문서를 말합니다.

“전자 항공권 확인증/Itinerary Receipt”이란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지정한 대리인의 규정에 맞게 전자 항공권으로 여행하는 고객에게 발행하는 고객 성명, 항공편, 고지 사항을 포함한, 이메일, 팩스, 인편, 우편 또는 택배 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되는, 여행 중 운송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전자쿠폰”이란 운송인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전자 탑승용 쿠폰 또는 관련 중요 자료를 말합니다.

“일(日)”이란 일요일과 법적 공휴일을 포함한, 일주일 중 7 일을 모두 포함하는 달력일을 의미합니다. 단, 통지를 할 경우에 당해 통지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효기간의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여행 개시일은 계산치 않습니다.

“지정된 도중체류지”란 운송인과 사전에 합의된 것으로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있는 특정 장소에 멈춤으로써 고객의 여정이 의도적으로 일시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탁 수하물”이란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고 수하물 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합니다.

“비위탁 수하물”이란 위탁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합니다.

“공동운항편/CODE SHARE 편”이란 항공권에 명시되어있는 운송인 이외의 타 운송인 또는 운송인들과의 계약에 의해 타 운송인이 운항하는 항공편에 운송인 코드를 부여하여 판매하는 항공권을 말합니다. 운송인의 공동편 운항 운송인의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동편 운항 운송인의 재량에 의해 본 운송약관의 규정, 특히 제 2.4 조에 명시된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약”이란 다음 중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 1929 년 10 월 12 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공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1955 년 9 월 28 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개정 바르샤바 협약

-1955 년 헤이그 및 1975 몬트리올에서 제 3 추가의정서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1975 년 헤이그 및 1975 몬트리올에서 제 4 추가의정서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1999 년 5 월 28 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칭함)

“마일즈 앤 스마일즈(MILES&SMILES) 상용고객 프로그램 및 보너스”란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인의 상용고객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행된 보너스 항공권, 동반자 항공권,
업그레이드(승급) 및 그 외 운송인이 지정한 규정을 말합니다.

“불가항력”이란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SDR”이란 특별인출권을 말합니다. 이는 유로, 일본 엔, 파운드, 미국 달러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의 종합적인 가치의 화폐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의 공식 국제단위입니다.

“SHY-여객 권리”란 터키 민간 항공 집행위원회의 총국이 제정한 “항공 운송으로 여행하는 여객의
권리에 대한 법률”을 말합니다.

“중간 기착/STOPOVER”이란 운송인의 규정 및 정부 규제와 상이 하는 않는 하에, 최초 출발지에서
마지막 도착지 사이의 여행 도중에 경유지에서 24 시간 또는 그 이상 계획된 단기체류를 말합니다.

“태리프”란 운송인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관련된 규정 및 절차와 동 운송에 적용하는 운임,
요율 및 요금을 말합니다.

“운송인”이란 항공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운송할 것을 위임 받은 항공운송인을 포함합니다.

“운송인 규정”이란 항공권 발행일에 유효한 테리프를 포함한 운송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 및 이에 부수하는, 본 운송약관 외의 이에 관련하여 공시 또는 형성된 규정을 말합니다.

“탑승용 쿠폰”이란 항공권의 일부분으로서 운송인 규정에 의해 여객이 운송될 특정 구간과 “VALID FOR CARRIAGE”가 명시된 쿠폰 또는 운송인의 예약 데이터베이스에 특정 항공편에서의 수송 예약을 기록한 전자예약 입력을 의미합니다.

“체크인 마감시간”이라 함은 운송인이 지정한 제한시간으로서 탑승객이 체크인 절차를 마치고 탑승권을 받아야 하는 최소 시간을 말합니다.

“지정 대리인”이란 운송인이 여객 운송서비스의 판매 대리인으로서 운송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임명하고 운송인을 대표하여 타 운송인도 포함한 항공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 대리인을 말합니다.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 될 사람을 말합니다.

“여객용 쿠폰/여객용 영수표”란 이러한 문구가 표시되고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지정 대리인이 여객 항공권의 일부로 발행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여객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쿠폰입니다.

“손해”란 기내 탑승 중이나 출발, 도착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한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적 부상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항공 운송 중 발생한 수하물의 파손, 분실, 전체 또는 일부 파손 등의 손해도 포함됩니다. 또한 여객이나 수하물의 항공 운송 지연으로 인해 생긴 손해도 의미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2.1 총칙

2.1.1 운송인이 요금을 대가로 하여 수행하는 모든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에, 제 2.2-2.5 항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본 운송약관이 적용됩니다.

2.1.2 운송인이 별도의 약관, 항공권, 탑승권 등에 별도로 규정을 기재하지 않는 한, 무상 및 할인 운송에도 본 운송약관이 적용됩니다.

2.2 미국 및 캐나다 운송

2.2.1 캐나다 출 도착 운송 본 약관의 규정은, 캐나다 내의 구간 사이에 또는 캐나다와 그 외에 어느 구간 사이에 실행되는 운송은, 캐나다에 적용중인 태리프에 기재되어 있는 한에 적용 가능합니다.

2.2.2 미국 출 도착 운송 본 약관의 규정은, 1958 연방항공법에 기재되어 있는 항공 운송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3 전세운송(CHARTER)

전세운송계약에 의거 행하는 여객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 전세운송계약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전세운송계약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정기 항공편의 수하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2.4 공동운항편/CODESHARE

운송인이 타 운송인과 공동운항 협정에 따라 운행하는 구간을 선택하는 경우, 항공권에 명시된 운송인 외의 타 운송인이 해당 항공편을 대체 운행할 수 있습니다. 타 운송인이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동편 운항 운송인의 재량에 의해 본 운송약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운송약관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경우 해당 규정은 본 운송약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의 웹 페이지의 공동편 운항 협정 또는 공동편 운항 운송인의 웹 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탑승 수속, 비동반 소아, 임산부 또는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여객의

탑승, 반려동물의 운송, 운송의 거절, 산소 공급 서비스 가능 여부, 위탁 수하물,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분실 수하물 책임한도 등 규정의 상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타 운송인의 운송약관을 검토하여 그에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객이 타 운송인이 운항 하는 구간은 예약할 경우 예약 시, 예약 시 운송인이 지정되지 않은 또는 예약 완료 이후에 변경될 경우, 운송인은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인의 지정 완료 즉시 여객에게 고지합니다. 운송인의 범위 밖의 수단으로 예약이 진행 되었을 경우 (예. 운송인의 웹 사이트 외의 관광 대행사 또는 웹 사이트), 운송을 실행할 운송인의 정체 또한 이의 변경에 대한 정보를 여객과 공유할 의무는, EC 규정 No 2111/2005 의 제 2.3. 조 및 제 11. 조에 의하여, 여객과 계약을 맺은 해당 대행사 또한 웹 사이트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여행객은, 공동운항편 여행의 예약을 할 경우, 관련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2.5 최우선 법령

본 운송약관에 명시 또는 언급된 규정이,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제외되지 못하는 해당 협약 또는 법률, 정부 규정, 관령 혹은 정부 규제와 상충할 경우, 그러한 약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조항이 무효하다 하여도 그 외 조항은 유효합니다.

2.6 운송인 규정보다 계약 조항의 우선

해당 운송약관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운송약관과 기타 운송인 규정이 특정 문제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본 운송 조건이 우선시합니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의 시행되는 태리프의 경우, 태리프가 최우선 법률로 취급 받습니다.

2.7 터키 국내선 운송 규정

제 2.6 항의 예외로서, 여객의 항공권 또는 운송인 규정에 제시된 국내선 운송약관 및 규정은 국내선 운송으로 한하여 본 운송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국내선 규정과 상이하지 않을 시에 본 운송약관은 국내선 운송에도 적용됩니다.

제 3 조

항공권

3.1 항공권의 운송 계약 증거성

3.1.1 여객 항공권은, 달리 증명되지 않는 한, 운송인과 항공권에 명시된 이름의 여객 사이의 운송 계약을 증거합니다. 항공권에 제시된 규정들은 본 운송약관 일부 규정들의 요약된 형태입니다.

3.1.2 항공권의 제시

항공편에 대한 탑승용 쿠폰 및 기타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여객용 쿠폰이 들어 있는 유효한 항공권 또한 운송인 규정에 맞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전자 항공권 확인증/Itinerary Receipt”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객은 해당 항공편으로 운송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만일 티켓 혹은 제시된 티켓의 일부가 훼손되었거나, 파손되었거나, 더럽혀진 경우 혹은 티켓이 운송인 혹은 지정 대리인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여객은 항공운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3.1.3 항공권의 훼손 및 분실

항공권 또는 항공권 일부가 분실되거나 여객에 의해 절단되거나 여객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이 들어있는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여객의 요청이 있고 여객이 해당 항공편에 대한 유효한 항공권이 정식 발권되었다는 즉시 확인 가능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운송인 규정 하에서 운송인은 새 항공권을 발권해 해당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일부를 대체해줄 수 있습니다.

3.1.4 항공권의 비양도성

항공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경우, 운송인은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1.5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

할인 항공권은 예약 변경에 관하여 다양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환불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권의 환불 또는 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항공권의 운임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2 유효기간

해당 항공권이나 본 운송약관, 태리프에서 달리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은 항공권 상에 기록된 첫 여행일로부터 1년 또는 일부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3.2.1 유효기간 연장

3.2.1.1 운송인은,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여객의 여행이:

3.2.1.1 (a) 여객의 좌석이 예약되어 있는 항공편이 취소되었을 경우,

3.2.1.1 (b)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서 지정된 정기 체류 지점이 취소되었을 경우,

3.2.1.1 (c)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3.2.1.1 (d) 운송인의 사정에 의하여 여객이 환승을 못한 경우,

3.2.1.1 (e) 객실 등급을 변경한 경우,

3.2.1.1 (f) 사전에 예약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시에는 운송인의 다음 운임이 지불된 동일 등급의 좌석 항공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2.1.2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의 유효기간 내에 예약 변경 요청을, 운송인이 좌석 가용성의 문제로 수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운송인 규정에 따라 연장합니다.

3.2.1.3 여객이 여행 개시 후 발병으로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운송인은 건강 진단서에 따라 여행이 가능하게 되는 날 까지 또는 그러한 날로부터 운임이 지불된

등급에 탑승이 가능하며, 여행이 재개 되는 지점 또는 최종 접속 지점을 출발하는 첫 항공편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러한 연장은 운송사의 규정 아래에서 해당 항공권의 운임 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가능합니다.) 단, 탑승용 쿠폰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중 체류지를 포함할 경우, 당해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인 규정에 따라 건강 진단서 상에 표시된 여행 가능 일자로부터 최장 3 개월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환자를 실제로 동반하는 자의 항공권 유효 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합니다.

3.2.1.4 여객이 여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당해 여객의 동반 직계가족 또는 기타 동반자의 항공권은, 최단 체류 요건의 포기 또는 유효기간 연장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여행 중 여객의 직계가족이 사망할 경우, 여객 그리고 그의 기타 실제 동반자의 항공권 또한 이와 같이 변경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당해 사망 증명서 또는 동 사본의 제출시 즉시 실행되며 유효기간은 사망일로부터 최대 45 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3 탑승용 쿠폰 사용 순서

3.3.1 여객의 항공권은 출발지부터 도중 체류지를 경유하여 최종 도착지까지 항공권에 기록된 운송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3.3.2 탑승용 쿠폰이 출발지로부터 합의된 도중체류지 및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대하여 여객용 쿠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여객이 항공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탑승용 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운송인은 그러한 항공권을 접수하지 않으며, 해당 항공권은 무효 처리 가능합니다.

3.3.3 각 탑승용 쿠폰은 예약된 대로 항공편의 동급 좌석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항공권이 처음 발행된 경우, 운임 조건 및 요청한 항공편의 좌석 가용성에 따라 나중에 좌석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3.4 운송인의 명칭 및 주소

운송인 명칭은 운송인 식별 코드 또는 항공권에 약어로 표시됩니다. 운송인의 주소는 첫 식별 코드 옆에 기재되어 있는 “운송인” 난에 출발 공항이 운송인의 주소로 받아들입니다.

제 4 조

지정된 도중체류지(STOPOVERS)

운송인 규정 및 정부 요건 아래 합의된 것으로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있는 특정 장소에 멈춤으로써 여객의 여정이 의도적으로 일시 중단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운임 및 요금

5.1 총칙

적용 운임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항공 운송에만 적용되며 별도의 요금 없이, 공항지역 내 또는 공항간 이동이나, 공항으로부터 시내까지의 지상 운송은 운임 또는 요금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5.2 적용 요금

본 약관의 적용 대상인 운송 요금은 운송인이 직접 또는 운송인을 대신해 게시되는 요금이며, 운송인 규정에 따라 산정된 요금입니다. 정부 요건 및 운송인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 요금은 해당 항공권의 첫 항공편 쿠폰의 적용 대상인 운송의 개시일에 발효되는 항공편 또는 항공편들 요금,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 일정/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첫 항공편 구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운송의 개시일에 발효되는 요금을 의미합니다. 결제된 금액이 적용 요금과 다른 경우, 운송인 규정에 따라 여객이 그 차액을 지불 또는 운송인이 그 차액을 여객에게 환불합니다.

5.3 경로

적용 운송인 규정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동일 운임으로 여행할 수 있는 2 개 이상의 경로가 있을 경우 항공권 발행 전에 여객이 경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항공권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가 특별히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경로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5.4 세금, 이용료 및 요금

운송인 규정이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는한, 여객 또는 여객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정부당국이나 운송인이 부과하여 징수하는 세금 또는 기타 부과금은 운송인이 정하는 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하며 여객은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5.5 지불 통화 및 적용 환율

운임 및 요금은 운송인이 수수할 수 있는, 공시된 통화 이외의 타 통화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운임 및 요금의 지불 또는 환불 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운송인이 설정한 환율을 사용합니다.

제 6 조

예약

6.1 예약의 조건

6.1.1 운송인 또는 지정 대리인이 서면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예약의 조건은 확약되지 않습니다.

6.1.2 운송인 규정이 정하는 경우 어떠한 요금과 관련하여서는 예약변경권이나 예약취소권을 제한하거나 배제시키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6.2 항공편 구입 기간 제한

여객이 운송인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좌석에 대하여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에는 운송인은 당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3 개인정보

여객은 항공편 예약이나 기타 서비스 제공, 이민 및 입국 절차의 간소화, 정부기관에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여객의 개인 정보를 운송인에게 제공되었음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주재 국가와 관계없이, 운송인 사무소, 타 운송인,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사, 정부와 정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전송 및 공유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6.4 좌석

운송인은 특정 좌석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여객은 항공편의 등급에 따라 좌석이 배정될 것을 인지합니다. 운송인은 승객의 안전이나 운항 목적상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심지어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에도 좌석을 배정 혹은 재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5 좌석 미이용

예약을 했던 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여객에 대해서는 운송인 규정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6 예약의 재확인

계속 여행 구간 또는 왕복 구간의 예약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객이 예약 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계속편 또는 왕복편 예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7 후속 예약 취소

사전에 알리지 않고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은 탑승객의 복귀 또는 후속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탑승수속(CHECK-IN)

여객은 항공기 출발 전 출국 수속과 탑승 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운송인이 지정한 시간까지 좌석 배정 및 수하물 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운송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제반 수속을 완료할 수 없을 정도로 늦게 도착한 여객을 위하여 출발시각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어떠한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운송인은 여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운송 거절과 제한

8.1 운송 거절 권리

제 8 조 및 제 12 조를 어긴 특정 여객 및 탑승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송인은 모든 항공편에서 여객 또는 여객의 수하물을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객에게는 항공권이 판매되지 않을 것이며, 여객이 유효한 항공권 및 탑승권을 소지하고 있고, 그 항공권이 규정에 맞게 발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여객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여객에게 그 어떤 권리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상 또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다음 경우에는 여객의 또는 여객의 수하물을 운송할 것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8.1.1 당해 조치가 출발지국, 도착지국 또는 경유지국의 적용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8.1.2 여객의 행동,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또는 알코올이나 약물로 인하여

8.1.2.1 운송인의 특별취급이 필요하거나,

8.1.2.2 여객에 불안을 초래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거나,

8.1.2.3 자신, 타 여객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8.1.2.4 항공편 탑승 운영 중, 연결 항공편에서 내리는 중이나 이륙 전 기내에서의 여하한 운영 중에 지상 요원, 승무원 또는 여객을 포함하는 사람에게 위협적, 학대적, 모욕적이거나 외설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 8.1.2.5 제 12 조의 사항에 준수하지 않았거나 지상 요원 또는 승무원의 업무 수행 중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각 경우,
- 8.1.3 운송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여객이 이전에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탑승객이 다시 그럴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8.1.4 여객이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 8.1.5 여객 운송에 적용되는 운임, 비용 또는 세금을 전액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운송인과 여객 (또는 항공권의 금액을 지불한 자)간의 협의된 신용거래가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 8.1.6.1 여객이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 8.1.6.2 여객이 통과지 국가에 입국 시도를 할 우려가 있거나,
- 8.1.6.3 여행 서류를 파기 할 염려가 있거나,
- 8.1.6.4 운송인이 보관을 위하여 요구하는 여행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각 경우,
- 8.1.7 여객이 제출하는 항공권이;
 - 8.1.7.1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운송인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 하였거나,
 - 8.1.7.2 분실, 도난 신고 되었거나,
 - 8.1.7.3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거나,
 - 8.1.7.4 운송인 또는 지정 대리인 외의 그 어떤 이로 인해 허가 없이 변경 및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항공권을 압수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8.1.8 자신이 항공권에 기명된 이름이 본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항공권을 압수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8.1.9 여객이 제출하는 보너스 항공권이 마일즈 앤 스마일즈 상용고객 프로그램 규정에 어긋나게 발행되었을 경우.

8.2 조건부 운송 인수

비동반 소아, 임산부, 질환자 또는 신체적 조건으로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은 운송인의 규정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운송인과 합의된 경우에 접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객의 운송 중 건강의 악화나 여타 결과에 대하여 운송인을 면책한다는 확실한 조건 하에 운송됩니다.

제 9 조

수하물

9.1 수하물로 접수가 불가한 물품

9.1.1 아래의 물품은 수하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9.1.1.1 본 약관 제 1.1 조항에 정의된 바에 따라 수하물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

9.1.1.2 위험물의 안전한 항공 수송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술적 설명 혹은 국제항공 운송연맹(IATA)의 위험물 규정에 나타나는 품목으로서 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물품 (자세한 정보는 요청 시에 운송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9.1.1.3 운송 출발지 혹은 도착지 국가의 법, 시행령 혹은 명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품목,

9.1.1.4 운송 도중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는 무게, 크기, 형태 혹은 특성으로 인하여 운송인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품목,

9.1.1.5 제 9.10 조에 명시된 규정 외의 생동물,

9.1.2 사냥 혹은 스포츠 목적이 아닌 총기는 수하물로 수송할 수 없습니다. 사냥 및 스포츠를 위한 총기 및 실탄은 운송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운송에 허용된 총기류는 안전 장치를 작동시켜 탄약을 빼고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탄약 운송에는 제 9.1.1.2 조에 명시된 대로 ICAO 및 IATA 규정이 적용됩니다.

9.1.3. 여객은, 위탁 수하물에 파손되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물건, 전자장치, 돈, 보석, 귀중한 금속, 은, 유가증권, 주식 증권 혹은 기타 귀중품 혹은 서류, 비즈니스 서류, 여권 및 기타

신분증이나 견본 등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9.1.4 운송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하에, 골동품 총기, 검, 칼 및 유사한 항목은 운송인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만 항공기의 객실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9.1.5 만일, 제 9.1 조에 언급된 항목이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으면, 수하물 접수 금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운송에 대해서는 본 약관 조항 중 수하물 운송에 관한 부과금, 배상 책임 한도 및 기타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조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이 아닌 운송 중 운송인은 그러한 항목의 어떠한 손실 혹은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2 운송 거부 권한

9.2.1 운송인은 제 9.1 조에 수하물로서 운송 금지 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품목들을 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품목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9.2.2 운송인은 크기, 형태, 외관, 중량, 내용물, 특성상의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하물 운송 수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9.2.3 운송인과 사전에 운송에 관해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운송인은 정해진 무료 운송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을 이후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9.2.4 운송인은 적합한 가방 또는 용기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포장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송인은 이를 위탁 수하물로 운송 수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9.3 수하물의 검색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여객의 몸 수색 및 검사 그리고 수하물의 수색 혹은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탑승객의 부재 중에 제 9.1.1 조에 서술되어있는 품목 또는 제 9.1.2 조에 의하여 운송인에게 제기되지 않은 기타 총기, 실탄 혹은 무기가 있는지 수하물을 수색, 검사실행 또는 이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운송인은 탑승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9.4 위탁 수하물

9.4.1 수속할 탑승객의 수하물을 받으면 운송인은 이를 보관하고 위탁 수하물 각각에 수하물 식별 태그를 부착합니다.

9.4.2 위탁 수하물에 이름, 머리글자 또는 기타 개인 정보가 부착되어있지 않을 경우, 여객은 위탁 수하물에 개인 정보(이름, 성, 전체 주소, 전화 번호)가 포함된 태그를 달거나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9.4.3 운송인이 그 어떤 이유로 반대의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 발생시에서는 운송인이 해당 항공편과 가장 근접한 시간의 탑재가 가능한 항공편으로 운송합니다) 여객이 탑승하는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9.5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운송인이 정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일부 수하물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들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공동운항편은, 구간을 운행하는 타 운송인의 수하물 규정이 적용 됨으로, 관련 규정은 해당 운송인의 웹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9.6 초과 수하물 요금

운송인 규정에 명시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는 운송인 규정에 기재된 방식과 요율로 초과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부과합니다. 운송인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또/또는 이로 비롯한 비용의 전액을 완납 받지 않은 경우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9.7 초과 금액 신고 및 부과금

9.7.1 운송인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여객은 해당 배상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 그 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여객은 그에 따른 부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9.7.2 운송의 일부를 실행할 타 운송인이 이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운송인은 초과 금액 신고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9.8 비위탁 수하물 (기내 수하물)

9.8.1 비위탁 수하물은 여객이 보관하며 객실에서 무료로 운송되는 수하물입니다. 여객이 기내에 가지고 타는 수하물은 반드시 여객의 앞자리 좌석 밑에 넣을 수 있는 크기이거나 객실 내 수하물 보관 선반에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운송인이 허용되는 무게나 크기를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기내에 들고 탈 수 없습니다.

9.8.2 화물칸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예: 예민한 악기류 등)은 사전에 운송인에 알리고 운송인이 이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 객실 보관함에 넣어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물품의 수송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9.9 위탁 수하물의 취합과 인도

9.9.1 여객은 도착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서 가능한 한 즉시 위탁 수하물을 취합해야 합니다.

9.9.2 수하물 확인증 및 수하물 식별 태그를 소지한 사람만이 위탁 수하물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수하물 확인증 및 수하물 식별 태그를 소지한 사람의 신원이나 권한을 확인하거나 취합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책임은 없습니다. 수하물표가 발행 되었고 또한 수하물이 어느 다른 방식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수하물 식별 태그의 미제출은, 수하물의 취합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9.9.3 수하물을 찾아가려는 사람이 수하물 확인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수하물 (식별) 태그를 사용해 수하물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운송인은 그 여객이 해당 수하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운송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여객에게 그 수하물을 전달할 것이며, 운송인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여객은 그러한 수하물 전달의 결과 운송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체 손실, 피해 또는 경비 지출에 대해 운송인을 면책하겠다는 적절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9.9.4 전달 시점에 수하물 확인표 소지자가 이의 제기 없이 수하물을 전달 받는 것은 그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부합되도록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9.10 반려 동물

9.10.1 개,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새 및 기타 애완동물 같은 동물들은 적절한 운반함에 넣고, 유효한 건강 및 예방 접종 확인서, 입국 허가서, 그리고 입국 또는 경유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서 사전에 운송인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운송인 규정에 따라 운송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탁 수하물 또는 기내 휴대 수하물로 동물 운송을 위해 최소 비행 6 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운송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려 동물은, 승인 받은 예약이 없을 경우, 항공기의 구조에 따라 지상요원의 승인 아래 접수 가능합니다.

9.10.2 생동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운송인의 초과 수하물 규정에 따라 요금이 징수됩니다.

9.10.3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동반한 인도견과 보조견은, 그 보관함 및 먹이를 포함하여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 운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9.10.4 동물의 운송 접수에 대해서는 해당 여객이 그러한 동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운송인은 그러한 동물의 부상, 분실, 지연, 질병 또는 사망, 또는 그러한 동물이 일체 국가, 주 또는 영토에 대해 입국 또는 통과를 거부 당하는 경우에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항공편 일정 및 취소

10.1 항공편 일정

운송인은 합당한 항공편을 통해 여객과 그 수하물을 운송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10.2 일정의 취소, 변경 등

운송인이 불가피하게 항공편을 취소, 중단, 경로 변경하거나 일정에 따라 합당하게 항공편을 운행하지 못하거나, 이미 확정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여객의 경유지 또는 목적지 지점에

착륙하지 못하거나, 여객이 예약해 둔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만드는 경우, 운송인은;

10.2.1 좌석 제공이 가능한 운송인의 타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10.2.2 운송인의 예정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른 운송인의 예정된 서비스, 또는 지상 운송 수단을 이용해 이동 경로를 변경해 항공권에 기재된 목적지로 또는 목적지까지 경로 중 일부 구간에 걸쳐 여객을 수송합니다. 수정된 경로에 대한 요금, 초과 수하물 수수료 및 그 외 일체 서비스 요금의 합계액이 항공권의 환불 금액 또는 항공권 중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환불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운송인은 여객에게 추가 요금 또는 부과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정된 경로에 대한 요금 및 부과금이 더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불합니다. 또는,

10.2.3 제 11 조에 따라 환불을 실시하며 그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10.3 탑승 거절 정책에 따라, 운송인은 탑승 거절된 여객에게 배상하지 않습니다.

10.4 손해를 유발할 의사를 가지고, 또는 무모하게, 또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운송인이 행동했거나 누락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여, 운송인은 시간표나 기타 발표 일정의 착오나 누락, 이륙 또는 도착 일시나 시간, 항공편 운항에 대한 당사 직원이나 대리점, 대리인의 진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환불

11.1 총칙

운송인이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여객이 예약 내역에 대해 자발적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운송인은 본 조항 및 운송인 규정에 따라 미사용 항공권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해 환불을 실시합니다.

11.2 환불 대상자

11.2.1 본 조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은 해당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 또는 해당 항공권 요금을 지불한 사람으로 만족스러운 증빙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환불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1.2.2 항공권 대금을 그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여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불한 경우, 그리고 운송인이 그 항공권에 환불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경우, 운송인은 해당 항공권에 대해 그 사람에게 한해, 또는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만 환불을 실시합니다.

11.2.3 분실 항공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에 여객 쿠폰 또는 여객 영수증을 제출하고, 모든 미사용 항공편 쿠폰을 제출해야만 항공권의 주인 또는 만족스러운 증빙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11.2.4 여객용 쿠폰 또는 여객용 영수증과 미사용 항공편 쿠폰을 모두 제시하면서 본 단락의

11.2.1 또는 11.2.2 에 따라 환불 대상인 사람임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이루어진 환불은 적절한 환불로 간주되며 그로써 운송인의 환불 책임 및 일체 개인으로부터의 추가적인 환불 청구에 응할 책임은 면제됩니다.

11.3 비자발적 환불

운송인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항공편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탑승객이 예약을 확인하고 체크인 기한과 관련 탑승 기한을 충족하고, 목적지나 기착지에 착륙하지 못하거나, 탑승객이 예약을 확인하고 도착 항공편과 출발 항공편 사이의 일정에 맞게 적절히 도착했지만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한 경우 관련 법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환불 금액은;

11.3.1 티켓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불한 항공권 요금과 같습니다,

11.3.2 티켓 일부를 사용한 경우, 아래 두가지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환불합니다.

11.3.2.1 여행이 중단된 지점부터 도착지 또는 다음 도중체류지 까지 편도 항공권의 비용 (지불된 세금, 수수료, 요금 및 예외사항에 의한 할증료를 제외하여), 또는

11.3.2.2 항공권 구매액과 사용된 운송 비용

11.4 자발적 환불

여객이 아래 명시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11.4.1 항공권을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 운임에서 적용 가능 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을 환불하며,

11.4.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불 운임 총액과 항공권이 사용된 구간의 적용 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을 환불합니다.

11.5 분실 항공권에 대한 환불

11.5.1 항공권 또는 그 일부가 분실되는 경우, 운송인이 만족할 수 있는 분실 증빙이 제출되고 적용되는 모든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 완료하는 시점에 아래의 조건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11.5.1.1 분실된 항공권이나 그 일부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이미 환불되지 않았거나 또는 대체되지 않았을 것,

11.5.1.2 분실된 항공권이나 그 일부가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었거나 해당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한도까지 환불을 받는 사람이 운송인이 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운송인에 상환 조치를 취하였을 것,

11.6 환불을 거부할 권리

11.6.1 운송인은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환불 신청을 받는 경우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6.2 운송인은 여객이 여행 국가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거나 다른 운송인 또는 다른 수송 수단을 이용해 출국할 것이라는 사실을 운송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출국 의사의 증빙으로 운송인 또는 해당 국가의 정부 공무원에게 제출된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7 통화

모든 환불은 해당 항공권에 대한 구매가 원래 이루어졌던 국가와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정부 법률, 규칙 및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전기 조항에 따라, 환불은 항공권 대금 결제 통화로, 또는 운송인 규정에 따라, 이외에 별도의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1.8 환불 가능 주체

환불은 운송인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권 원 발행자인 운송인, 또는 환불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 그 대리인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기내 탑승 시 품행

12.1 여객이 항공기에 탑승해 있는 동안 항공기, 또는 탑승해 있는 일체 개인 또는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의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또는 다른 여객들이 타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운송인은 해당 여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포함해, 그러한 행동의 지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2.2 여객은 기내에서 휴대용 라디오, 무선 조종 장난감이나 무전기,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 PDA, CD, DVD, MP3 플레이어 등을 포함한 전자 게임기 또는 무선 신호 전송 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기내 방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객은 보청기 및 심박 조율기를 제외하고, 운송인의 허가 없이 기내에서 일체 다른 전자 기기를 작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12.3 여객은 이착륙시에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하며, 좌석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객은 승무원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13 조

운송인의 주선

운송인이 항공 운송 계약 체결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주선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운송인은, 그의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과실 외에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제 14 조

행정 절차

14.1 총칙

출발지, 도착지 또는 경유지 국가의 모든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및 여행 관련 요건 및 운송인 규정 및 지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객의 책임입니다. 운송인은 필요한 서류 또는 비자를 발급 받고 서면으로든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제공되었든 그러한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및 요건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해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직원이 여객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지원 또는 정보에 대해, 또는 그러한 서류 또는 비자를 발급 받지 않거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요건, 규칙 또는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는 데 따라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14.2 여행 서류

여객은 모든 출국, 입국, 건강 및 관련 국가들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따라 필요한 기타 서류들을 제시하고 운송인이 그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을 승인해야 합니다. 운송인은 해당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을 따르지 않은 여객, 부적합한 서류를 제출한 승객 또는 운송인이 그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일체 여객에 대해서는 그 운송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환청구권을 보유합니다.

14.3 입국 거부

여객은 여객이 경유지 국가든 목적지 국가든 특정 국가 입국 자격을 갖추지 않아 정부의 명령에 따라 운송인이 여객을 원 출발지 또는 다른 곳으로 돌려 보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요금을 운송인에 지불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운송인은 그러한 요금의 지불을 위해 미이용 운송에 대해

운송인에 지불된 일체 금액, 또는 운송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여객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입국 거절 지점 또는 강제 출국 지점까지의 운송에 대해 지불받은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14.4 벌금, 구금 비용 등에 대한 여객의 책임

운송인이 여객이 관련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및 여행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일체 벌금 또는 범칙금 또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지출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해당 여객은 그렇게 지불되거나 보증금으로 지불된 일체 금액 및 그렇게 발생한 일체 지출 비용을 요청 받는 즉시 운송인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운송인은 그러한 지출 비용 지불을 위해 미이용 운송에 대해 운송인에게 지불된 일체 금액, 또는 운송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여객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5 세관검사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관리의 요구에 따라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의 검사에 참관하여야 합니다. 운송인은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 한 경우, 여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4.6 보안 검색

여객은 정부 직원 또는 공항 담당자 또는 운송인이 실시하는 모든 보안 검색에 응해야 합니다.

제 15 조

연계 운송인

1 개의 항공권 또는 1 개의 항공권과 그에 연결하여 발행된 연결 항공권 하에 2 인 이상의 운송인이 접속하여 행하는 운송은 단일 운송으로 간주합니다.

제 16 조

손해 배상 책임

16.1 “협약”이 적용 가능한 국제운송과 관련한 운송의 경우, 해당 운송에는 협약이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6.2 협약 적용 대상인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16.2.1 터키 법률이 적용될 시에는, 운송인의 책임은 제 2920 터키 민간항공법이 적용됩니다.

16.2.2 운송인은 손해가 운송인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 한해, 여객 또는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갖습니다. 여객이 과실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 운송인의 배상 책임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16.2.3 운송인이 손해를 유발할 의사를 가지고,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무모하게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를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16.2.3.1 각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신체적 피해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이 해당되는 협약에 명시되어있는 책임으로 제한 됩니다. 그러나 적용법령에 별도의 책임 한도가 있을 경우, 그 책임 한도가 적용됩니다.

16.2.3.2 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16.3 전항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적용 여부에 관계 없이:

16.3.1 운송인은 운송인에 의한 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 또는 여객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운송인은 타 운송인에 의한 운송에 대해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타 항공사에 의해 운송되는 여객의 수하물을 운송인이 탑승 수속을 한 경우 해당 운송인의 대행사 역할만을 합니다. 또한, 여객은 위탁 수하물 관련 첫 그리고 마지막 운송인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6.3.2 운송인은 손해가 운송인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 외에 여객의 비위탁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객이 과실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 운송인의 배상 책임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이 적용됩니다.

16.3.3 운송인이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운송인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6.3.4 운송인이 손해를 유발할 의사를 가지고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무모하게

어떤 작위나 부작위를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의 책임은;

a)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위탁 수하물에 대한 책임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을 한도로 하고,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에는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을 한도로 하며 (많은 국가들에 따라 250 프랑스 골드프랑을 미국 달러화 약 20.00 불, 5,000 프랑스 골드프랑은 미국 달러화 약 400.00 불 또는 흡사한 타 화폐로 적용됩니다),

b)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책임한도는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에 대해 1 인당 SDR 1,131 로 제한됩니다.

어느 경우가 됐든 해당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배상 책임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협약의 목적 상, 수하물의 중량이 수하물 확인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탁 수하물의 총 중량은 운송인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 등급에 대해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제 9.7 조에 의거해 더 높은 금액이 신고된 경우, 운송인의 배상 책임은 그러한 더 높은 신고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16.3.5 운송인의 배상 책임액은 입증된 손해 액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운송인은 그

이외에는 간접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6.3.6 운송인은 여객의 수하물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에 의해 그 여객에 발생한 부상 또는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유품이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품 또는 항공사의 소유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여객은 그 결과 항공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지출 경비에 대해 항공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16.3.7 여객의 위탁 및 기내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깨지기 쉽거나 상하기 쉬운 품목, 전자장비, 돈, 보석류, 귀금속, 은식기류, 유통 어음, 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 업무 서류, 여권 및 기타 신분

증명서, 표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출발/도착 운송에 있어 운송인이 수하물 검사를 실행하여 접수하였을 경우 본 조항의 한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운송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운송인의 책임 한도는 이에 준합니다.

16.3.8 나이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본인에게 위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여객이 탑승하는 경우, 운송인은 그러한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의 악화에 기인하는, 사망을 포함하는 일체 질환, 부상 또는 장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3.9 운송인 배상 책임에 대한 일체의 면제 또는 제한은 운송인의 판매인, 직원 및 대리인, 그리고 운송인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및 그러한 자의 판매인, 직원 및 대리인에 적용되며 그 이익에 부합될 것입니다. 운송인 및 그러한 판매인, 직원, 대리인 및 소유자들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합계 금액은 운송인의 배상 책임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6.4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 한, 여기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협약 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운송인의 배상 책임에 대한 제외나 한도에 대한 포기를 명시하는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16.5 특별협정

16.5.1. 총칙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공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및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한 몬트리올 협약에서 지정된 책임 한도가 운송인에게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바르샤바 협약의 제 22.1 조에 따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국제협정(IIA 및 MIA)에 가입된 및/또는 EEC 이사회 규정 No 2027/97을 적용하는 직접 행한 운송과 관련하여, 터키항공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개정바르샤바협약 제 22.1 조에 따른 책임한도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SDR 113,100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바르샤바협약 제 20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터키항공은 본 조항에 기재된 책임 정책을 당사에 의한 운송 중에만 받아들이며, 타 운송인에 의한 운송에 대해 그 어느 법적 책임이 부여하지 않고 또한 타 운송인이 수행한 운송에 대해 그 어느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운송약관의 범위 내에서 터키항공에게 해당되는 책임 정책은, IIA 그리고 MIA 또한 EEC 규정 No 2027/97 으로 명시된바 준용됩니다. 상기 언급된 규정이 다음의 조항과 충돌 시에, 앞서 명시된 협정이 준수됩니다.

16.5.2 운송인의 책임

- A.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의 경우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113,100 SDR 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운송인 또는 그 판매인들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운송인 또는 그 판매인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운송인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 방어 수단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B. (A) 항에도 불구하고, 만일 피해가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일정부분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운송인이 입증하면, 해당 법률에 따라 운송인은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C. 상기 하위 단락 (A) 에 따른 방어수단 또는 방어방법의 포기를 제외하고, 운송인은 그러한 일체의 청구에 대해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방어 수단을 보유하며, 제 3 자에 대해서도 기여 및 면책 권리를 한정 없이 포함해 다른 일체 개인에 대한 모든 구제 권리를 보유합니다.
- D. 운송인의 한도 포기나 방어 수단 포기는 어떤 방법으로 주장이 이루어지든 공공 사회 보험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에 의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운송: 헤이그에서 조인된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 되는 경우 제 22.1 조의 한도 및 제 20.1 조의 방어 수단,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 되는 경우는 협약의 재 21 조에 명시된 한도 및 제 20 조의 방어수단이 적용됩니다. 운송인은, 여객 또는 그의 부양가족에게, 공공 사회 보험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의 지불 외에, 배상 가능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미국의 그러한 단체와 관련한 경우 제외).

E. 본 약관 아래 제기될 배상 소송에 여객의 소재지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 5 관할권 권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16.5.3 선금

A. 터키항공은, 여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즉각적인 경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확인된 날짜로부터 15 일 이내에 선금을 지불 합니다.

B. (A) 항에 준수 함에 반면, 여객의 사망 사고 경우, 이 선금은 15,000 SDR 이상이어야 합니다.

C. 선금을 지불함은 당장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운송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이러한 선금이 상계 내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D. 여객의 부상 혹은 사망 그의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일정부분 원인 책임이 있는 경우, 또는 선금을 받은 사람이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선금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 경우와 같은 것을 운송인이 입증한다면,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선금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금을 상환 받을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청구 및 조치에 대한 시간 제한

17.1 청구 통보

위탁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수하물을 전달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손해를 발견한 즉시, 그리고 수령일로부터 늦어도 7 일 이내에 운송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지연이 발생한 경우, 수하물을 본인이 수령한 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21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운송인에 대한 소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이의

제기는 반드시 전기한 기한 내에 서면 형식으로 작성해 발송해야 합니다.

17.2 조치의 제한 (소송제기 기간)

손해에 대한 일체 권리는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또는 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 소실됩니다.

제 18 조

포기 및 수정

그 어느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대표자도 운송계약, 본 운송약관의 여하한 규정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기준언어

본 운송약관은 몇 가지 언어로 제공됩니다. 터키어본과 타 언어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터키어본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운송인 명칭: TÜRK HAVA YOLLARI A.O.

약칭: TK

출판 일자: 2016. 06. 22